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77
----------	-------

발의연월일 : 2025. 8. 8.

발 의 자 : 이수진 · 최혁진 · 용혜인
서영석 · 서미화 · 김 윤
김준혁 · 전진숙 · 이개호
김문수 · 박해철 · 남인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는 의료인 및 수련생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는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수련시간이 노동시간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수련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 · 육아 · 질병 · 부상 · 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 · 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8조·제8조의2·제8조의3·제9조 및 제15조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 본문 중 “기간”을 “기간(휴가·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60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16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24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시간”을 “11시간”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

간·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육아·질병·입영 등에 의한 휴직)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소속 전공의가 육아·질병·입영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직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3(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휴가·휴직 종료 후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의 수련의 연속성(이하 “수련연속성”이라 한다)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가 휴가·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수련연속성의 보장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수련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련병원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휴일, 휴가 및 휴직

9. 수련연속성의 보장 및 불이익 방지 방안

10.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제15조제1항제5호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4항 및 제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사회”를 “의사회 소속 전공의 단체”로, “전공의 대표자”를 “자”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3.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5.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6.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7.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8.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③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여 환자보호, 응급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련시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

- 지에 따른 임신부의 보호, 제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불이익 금지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14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련병원등의 장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정기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u>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u>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u>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u>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수련시간 등) ① ----- ----- <u>기간(휴가·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u>----- -----<u>60시간</u>----- ----- -. ----- ----- -. ----- ② ----- -----<u>16시간</u>----- ----- ---. ----- -----<u>24시간</u>----- -----. ③ -----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8조(임산부의 보호) ① (생략)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11시간-----
-----.

제8조(임산부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3항-----

-----.

제8조의2(육아·질병·입영 등에 의한 휴직)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소속 전공의가 육아·질병·입영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

<신 설>

·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직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3(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휴가·휴직 종료 후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의 수련의 연속성(이하 “수련연속성”이라 한다)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가 휴가·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수련연속성의 보장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수련연속성을 보장

	<u>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련병원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u>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①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7. 휴일 및 휴가</u>	<u>7. 휴일, 휴가 및 휴직</u>
8. (생략)	8. (현행과 같음)
<u><신설></u>	<u>9. 수련연속성의 보장 및 불이익 방지 방안</u>
<u><신설></u>	<u>10.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u>
<u>9. (생략)</u>	<u>11. (현행 제9호와 같음)</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 ----- ----- ----- ----- -----.
1. ~ 4의2. (생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u>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u>	5. <u>제8조제4항 및 제8조의2제3</u>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
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
병원등의 장

2.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수련병
원등의 장

<u>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u>	<u>3.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u>
<u>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u>	<u>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u>
<u>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u>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6.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u>	<u>1. 제8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u>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u>
<u>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u>	<u>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u>

2. 제14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련병원등의 장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정기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여 환자보호, 응급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정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5.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6.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7.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8.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③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여 환자보호, 응급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정

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 설>

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련시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 제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불이익 금지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14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련병원등의 장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u>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② <u>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정기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u>
--	---